

창원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11706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117065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소1035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변론종결 2024. 5. 24.

판결선고 2024. 7. 1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소1035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및 항공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원고가 설립한 인도 현지법인인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2020. 2. 5. 피고와 주재기간을 2020. 2. 10.부터 2023. 2. 9.까지 3년간으로 하는 해외법인 주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7.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8.경부터 C에서 근무하다가 2021. 9. 25.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입사할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기간 36개월, 만기 시 3,000만 원 지급, 피고 본인 부담 600만 원, 국비지원 2,400만 원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입사 후 3년 도과 전 원고에서 퇴사하고 C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국비지원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국비지원 부분 명목으로 합계 10,03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3, 14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나 C에서 3년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입사 후 3년 경과 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지원금이 3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의 경우 피고의 해외법인인 C 주재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내일채움공제 약관(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7호),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제25조), ② 피고가 C으로 파견될 당시 원고 측에 이메일을 보내어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들어 있고, 3년 계약’이라는 것을 밝혔으므로(갑 제14호증의7 2면), 원고도 위와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취지와 피고의 가입기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지원금 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 · 피고는 주재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해외법인 주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단순히 피고의 해외 주재에 따른 보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공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원고나 C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지원금은 피고가 원고나 C에서 3년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된 것인데 피고가 입사 후 3년 경과 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 1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청구와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및 항공료 청구 부분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3691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이진석, 판사 김상욱